

대전고등법원 2022. 4. 27 선고 2022나10260 판결 [구상금, 손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사 이아무, 피재경)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4. 27.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가합10029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7. 2. 접수 제250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살피더라도 잘못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 제3면 제1행의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 고침

○ 제3면 제2행 이하의 “피고 회사”를 “이 사건 회사”로, 제5행 이하의 “피고 B”을 “B”으로 각 고침

○ 제7면 제13행 이하 “나)”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2017. 6. 14. 이 사건 회사가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7. 1. 당시에는 이미 원고에 대한 구상금 및 연대보증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2020. 8. 19.부터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0. 9. 8.에는 대출약정상의 기한이익상실을 원인으로 신용보증사고로 처리가 되었으므로, B은 제1 신용보증약정 제6조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E에 대위변제하기 전이라도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점, ③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8년부터 피고와 농산물거래를 하면서 2018. 7.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금 72,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가 추후 일부 변제한 바 있고, 이후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의 대금채무 또한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이 209,050,000원에 이르는 등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와 B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원고와 B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2020. 7.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20 8. 19.부터 이 사건 회사가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E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고 2021. 1. 12. E에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B에 대한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금 등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9면 제10행의 “그에 대한 변제로서”를 “그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로 고침
○ 제9면 제15-16행의 “다)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다) 나아가 책임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로 고침

○ 제10면 제4-7행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무렵 F 소유의 이 사건 공동담보물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대출금채무 전액인 3억 원이고 물상보증인인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가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0원임을 알 수 있다.”를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르면,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무렵 G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채무자인 F의 채무는 대출금채무의 원금 3억 원 및 이자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F 소유의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동담보물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대출금채무의 전액이 된다. 여기에 물상보증인인 B이 채무자인 F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물상보증인인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가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0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로 고침

○ 제10면 아래에서 첫째 행 이하의 “나)”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나) 살피건대,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4. 30. 이 사건 회사에 마늘 90톤 등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이 이 사건 회사의 농산물대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9. 7.경까지 농산물 거래대금 216,350,000원 중 209,05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B은 2020. 5. 30.경 채무보증인의 지위에서 미지급대금이 209,05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하면서 2018. 7.경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농산물대금 7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고 다시 거래를 재개한 이후 또다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발생한 농산물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최종적으로 농산물을 납품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0. 7. 1.에야 위 대금채권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그 무렵에는 B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비하여 훨씬 큰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점, ㉣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도 B으로 하여금 2021. 12. 30.까지 무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점(다만, 2021. 12.

27.경부터는 피고가 거주하고 있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인 B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이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고 하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명, 판사 모성준, 판사 이해성

[별지] 2022나10260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서산시 K, L, M, N, O에 있는 P아파트 Q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R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0층 아파트 Q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S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84.91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충청남도 서산시 K 대 10,152㎡

2. 충청남도 서산시 L 대 8㎡

2. 충청남도 서산시 O 대 485㎡

2. 충청남도 서산시 N 대 90㎡

2. 충청남도 서산시 M 대 62㎡

대지권의 종류 : 1, 2, 3, 4, 5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0797분의 33.628. 끝.

